

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b></p> <p>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3자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</p> <p>③(생략)</p> <p>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<u>제3자</u>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<u>대통령령</u>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~⑥(생략)</p>	<p><b>제22조(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)</b></p> <p>①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<u>제삼자</u>로부터 위탁 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.</p> <p>②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, 그 밖에 법시행령 제268조제1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,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,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 <p>④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·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,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<u>제삼자</u>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<u>법시행령</u>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⑤~⑥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38조(수익자총회)</b></p> <p>①~⑤(생략)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</p>	<p><b>제38조(수익자총회)</b></p> <p>①~⑤(현행과 같음)</p> <p>⑥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. 다만,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</p>

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

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⑨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

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.

⑦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다만,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(이하 이 항에서 “간주의결권행사”라 한다)한 것으로 본다.

1.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

2.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

3.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

4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

⑧집합투자업자(제4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는 제6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(이하 “연기수익자총회”라 한다)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⑨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6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

소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3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”으로 하고,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”로 한다.

⑩ · ⑪(생략)

**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**

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신탁계약 변경 또는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
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5조제3항 각호의

좌수의 4분의 1 이상”은 “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”으로 보고,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”은 “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”으로 본다.

⑩ · ⑪ (현행과 같음)

**제39조(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)**

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.

1.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(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)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
2.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

<삭제>

<p>경우는 제외한다)</p> <p><u>3. 신탁계약기간의 변경</u></p> <p><u>4.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. 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5.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</u></p> <p><u>6.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7.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</u></p> <p><u>8.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</u></p> <p><u>9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 <p>②~⑤(생략)</p>	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~8. (생략)</p> <p><u>9. 법 제442조에 의한 분담금 비용</u></p> <p><u>10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</p> <p>③(생략)</p>	<p><b>제43조(기타 운용비용 등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제1항에서 “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”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.</p> <p>1~8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9.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</u></p> <p>③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신탁계약 중 제39조 제1항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44조(신탁계약의 변경)</b></p> <p>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다음</u>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<u>1. 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</u></p>

<p>②~⑤(생략)</p>	<p><u>수,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</u></p> <p><u>2. 신탁업자의 변경(제45조제3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<u>3. 신탁계약기간의 변경(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</u></p> <p><u>4.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. 다만,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,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5.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변경</u></p> <p><u>6. 집합투자업자의 변경. 다만, 합병·분할·분할합병 및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7.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</u></p> <p><u>8.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</u></p> <p><u>9.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</u></p> <p>②~⑤(현행과 같음)</p>
<p><b>제48조(투자신탁의 합병)</b>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</p>	<p><b>제48조(투자신탁의 합병)</b>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. <u>다만,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 <p><u>1. 법 제22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</u></p> <p><u>2.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</u></p> <p><u>3. 신탁계약서에 따른 투자목적,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</u></p>

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·②(생략)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, 정정신고서, <u>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</u>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, <u>투자설명서</u>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<u>서면</u>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(생략)</p> <p>⑤~⑩(생략)</p>	<p><b>제49조(공시 및 보고서 등)</b></p> <p>①·②(현행과 같음)</p> <p>③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19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, 정정신고서, 투자설명서, <u>간이투자설명서 및 증권</u>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, 투자설명서 <u>및 간이투자설명서</u>의 경우 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④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, <u>전화·전신·모사전송,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</u>으로 표시한 경우</p> <p>2.(현행과 같음)</p> <p>⑤~⑩(현행과 같음)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